

2012. 8. 13 Vol. 33

주간 농업·농촌 동향

주요 농정 이슈

2012년 세법개정안
가축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적극 추진

거시경제 동향

최근 국내 경제동향

기획 정보

EU의 CAP 개혁안 논의 동향

농정 여론 동향

농업 전문지 여론 동향

연구 지원 정보

2012년 7월 농림수산물 수출 실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 분석실

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동향분석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사오니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농정 이슈_1

2012년 세법개정안

※ 본 자료는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내용 중 농림어업 관련 개선 사항에 대해 요약정리한 것임.

□ 농림수산업 분야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개정이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지원
- ※ (현행) 4년간 50% → (개정) 5년간 50%

○ 제약산업 등 신성장동력·원천기술분야 R&D 세제지원 확대

- (개정이유)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백신·임상평가기술) 및 미래 성장동력 R&D 지원
- ※ 적용기한 연장: '15년 12월 31일(3년간)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 확대 및 농산촌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지원
- ※ 적용기한 연장: '15년 12월 31일(3년간)

○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개정이유) 한·미, 한·EU FTA의 발효에 따라 농어업에 대해 지속 지원
- ※ 적용기한 연장: '15년 12월 31일(3년간)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개정이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속 지원
- ※ 적용기한 연장: '15년 12월 31일(3년간)

○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제고
- ※ 적용기한 연장: '15년 12월 31일(3년간)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개정이유)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및 농가부담 경감 지원

※ 적용기한 연장: '15년 12월 31일(3년간)

○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 (개정이유)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속 지원

※ 적용기한 연장: '15년 12월 31일(3년간)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감면**

- (개정이유) 영농규모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지속 지원

※ 적용기한 연장: '15년 12월 31일(3년간)

○ **농업기계 보유현황 신고주기 변경**

- (현행) 2년 → (개정) 1년(농업용 로더(2톤~4톤 미만) 및 농업용 화물차)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및 5% 분리과세 전환**

- (개정이유) '76년 신설 이후 장기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진 점과 다른 금융회사와의 과세형평 등 감안

※ 출자금은 3년간 5% 저율 분리과세하고, 예탁금은 예정대로 5% 저율 분리과세하고 '14년 이후부터는 9% 저율 분리과세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 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

- (개정이유) 농민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 감안

※ (현행)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을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개정) 재촌·자경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 (개정이유) 일반 비영리법인이나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성 제고

※ 적용기한 연장: '15년 12월 31일(3년간)

※ 세율: (현행) 9%로 단일세율 → (개정) 과표 2억 원 초과(15%)구간 신설

※ 복식부기 기장: (현행) 의무면제 → (개정) 의무부여

- ※ 과세표준: (현행)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접대비, 기부금을 세무조정 → (개정) 세무조정 사항 추가(인건비 등 과다경비, 업무무관비용)

○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조정

- (개정이유) 부가가치율을 경제현실 등에 맞게 조정
 - ※ 농림어업: (현행) 30% → (개정) 20%
 - ※ 음식점업: (현행) 40% → (개정) 10%
 - ※ 숙박업: (현행) 40% → (개정) 20%

□ 주세 분야

○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 완화

- (개정이유)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투자확대 유인 제고
 - ※ 제조시설: (현행) 저장조 50kl, 나무통 85kl, 담금조 7kl → (개정) 저장조 25kl, 나무통 50kl, 담금조 5kl
 - ※ 직매장 기준: (현행) 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 → (개정)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

○ 수출입업자의 경쟁촉진을 위해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

- (개정이유)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투자확대 유인 제고
 - ※ (현행)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창고 66㎡ 이상 → (개정) 자본금 삭제, 창고 22㎡ 이상

○ 전통주 등 정의 규정 신설

- (민속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주류부문 문화재보유자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한 주류
- (지역특산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인근 지역의 농산물로 제조한 주류
- (직매장)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
 - ※ 전통주에는 안동소주, 진도홍주, 선운산 복분자주 등이 있으며, 현재 주세의 기본세율의 50%를 경감받고 있음.

○ 소주 명칭 통합

- (개정 사유) 세율 등이 동일하여 구분실익이 적은 점 등 감안
※ (현행) 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로 구분→ (개정) 소주로 통합

○ 주류유통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법령화

- 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운반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 명확화

○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

- 주류의 표시사항(원료, 제조일자 등) 및 첨가재료(아스파탐, 당분 등)는 주세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보건복지부·식약청으로 이관

□ 관세 분야

○ 관세평가 제도 개선

-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세관장과 납세자간 정보제공 등 협력의무 규정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법적안정성 강화를 위해 납세자가 거래가격의 적정성을 입증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는 제도 신설

○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통관할 수 있는 민간업체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
※ 현행 승인요건: 자본금(5억원 이상), 시설(X-ray 검색기 설치 등) 등

○ 품목분류 제도 개선

- 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물품 제조자에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허용

○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

- 상대국이 협정 미이행시, 협정상 분쟁해결제도와 병행하여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보상협약, 협정상의 관세혜택 부여 중단 등

※ 본 자료는 8월 3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가축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적극 추진」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피해 상황

- 전국에 폭염경보가 계속 발효 중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보
- 7월 20일~8월 3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집계한 결과, 가축 107천마리, 바지락 20ha가 폐사한 것으로 파악
 - ※ 피해상황(107천마리): 닭 100천마리, 오리 7천마리, 돼지 45마리

□ 대책 방안

-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복구 대책 시행을 위하여 태풍·호우 위주로 운영 하던 “재해대책상황실”을 확대하여 축산팀과 양식팀을 보강
- 농촌진흥청과 지자체에서는 “현장기술지원단”을 운영하여 사양관리 요령 등 현장지도 강화
 - 지난 7월초 “여름철 가축관리 요령(7.6)” 및 “하절기 가축질병 관리방안 (7.3)”을 제작, 전국 축산농가에 배포(각 20만부)하는 등 하절기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가축사양관리 및 질병 예방요령 홍보
-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가축재해보험(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에서 피해보장 실시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 피해지원이 이루어질 예정
 - ※ 시·군·구 당 피해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그 미만인 경우는 지자체에서 지원

□ 참고

<폭염·이상수온 발생시 농어업피해지원 제도>

- 폭염·이상수온으로 농어업피해 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정의)에 따라 재해로 인정되어 국가 및 지자체에서 피해 지원 가능
 - 시·군·구 당 3억원이상 피해시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 ※ 3억원 미만 피해는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 내용
 - ※ 가축: 입식비(마리당 돼지육성돈 139천원, 육계중추 740원, 오리중추 2,564원)
 - ※ 어패류: 입식비(바지락 3,750천원/ha)
- 또한, 농어업재해보험에 소·돼지·말·가금류에 대하여 폭염 특약을 가입한 농가(1,066건)는 보험에서 피해보장
- 신고절차
 - (농업재배대책법) 피해발생→피해신고(피해자→읍·면·동)→피해복구계획 수립(시·군 또는 시·도)→3억원이상 피해발생시 보고(시·도→농식품부)→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복구지원
 - (농업재해보험법) 피해발생→피해신고(피해자→일선가입농협)→피해 여부 확인 및 손해평가(손해평가인)→결과보고(지역농협→농협손해보험)→보험금지급심사(농협손해보험)→보험금 지급(농협손해보험→일선농협→피해 농어가)
- 재해대책상황실 확대운영(축산팀, 양식팀 보강)
 - (사양관리) 가축·농작물·양식수산물 등 폭염 피해최소화를 위한 사양 관리 지도·홍보 실시(축산국, 어업자원관, 농촌진흥청)
 - 지속적인 피해현황 파악 및 필요시 신속지원 등

거시경제 동향

최근 국내 경제동향

※ 본 자료는 8월 9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내수 및 대외거래

- 대외부문의 높은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모습

※ 소비자심리지수: 5월 105 → 6월 101 → 7월 100

- 설비투자: 투자심리 위축, IT부문 투자 둔화 등으로 큰 폭 감소

※ 설비투자지수: 전월대비 0.1% → -6.3%

- 건설투자: SOC 재정집행 확대 등으로 토목이 증가하였으나 주거용 건물건설 부진 등으로 감소

※ 건설기성액: 전월대비 2.5% → -3.3%

- 7월중 수출(446억달러): 전년 동월대비 8.8% 감소하였으며 일평균 수출도 18.6억달러로 2010.12월(18.0억달러) 이후 최저치 기록

□ 생산활동 및 고용

- 6월중 제조업 생산: 반도체·부품, 담배 등에서 늘었으나 기타운송장비,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전월대비 0.5% 감소

- 서비스업 생산: 출판·영상·방송통신, 예술, 스포츠 등이 증가하였으나 도소매, 운수 등이 감소로 전환되며 전월대비 0.4% 감소

- 고용: 취업자수가 전월대비 4.8만명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대비로는 예년 수준을 웃도는 36.5만명이 증가하며 양호한 흐름을 지속

※ 실업률(계절조정)은 3.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 물가 및 부동산가격

○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5% 상승

- 전월대비로는 석유류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0.2% 하락
-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은 **전년 동월대비 1.2% 상승**하여 오름세 둔화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약세 지속

□ 중압의견

○ 국내 경기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

- 6월중 소비, 투자 등 주요 내수지표가 전월보다 하락한데 이어 7월에도 수출이 전년 동월대비 8.8% 감소

○ **향후 성장경로에 있어서는**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신흥국 경기 둔화 등의 **하방리스크가 우세**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둔화,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일부 리스크 요인이 잠재**
-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기획 정보

EU의 CAP 개혁안 논의 동향

※ 본 자료는 농협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차기 CAP(공동농업정책) 개혁과 EU의 재정·성장 전략”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EU의 CAP 개혁의 배경

○ 시기별 CAP¹⁾의 농정 변천 과정

구분	내용
1960년대	· 식량부족 해소를 위한 식량안보 확충 에 초점
1970년대	· 농산물과잉이 문제되자 이의처리를 위해 70년대 중반 이후 수출 보조에 중점
1992년	· 현대적 개념의 첫 농정개혁 실시(시장왜곡이 큰 시장가격보조를 면적기준의 소득직접지불로 전환)
1999년	· Agenda 2000은 농촌개발을 농정의 제2기등으로 설정 하여 경영의 다각화, 젊은 농업인 육성, 농업환경조치 등을 강화
2003년	· 기존 보조를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decoupled) 단일직불로 통합 하였고 보조요건으로 식품안전, 동물복지, 환경보전 등의 기준 강화
2008년	· 농정검진(Health Check) 을 추진하여 농정개혁 실시 (2003년의 개혁 조치 이행 평가 및 개혁과정에 필요한 정책조정 제시)
현재	· 차기 CAP 개혁 (2014년~2020년까지 적용)에 대한 검토 진행

○ 현재 EU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차기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개혁은 **최근 EU 내외의 정세와 재정·성장 전략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EU 내외의 정세 변화**) ① WTO 농업협상의 정체, ② 농산물의 국제 가격 상승, ③ EU 가맹국 증가 등

※ 특히, 대외통상교섭이나 생산과잉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 하에서, 불안정한 국제농산물시장 및 신규가맹국에 대한 대응이 CAP 개혁을 움직이는 중심에 있음.

- EU의 CAP 개혁은 다음의 다년도 재정구조(2014-2020년) 개편과 함께 실시됨.

※ 예산의 뒷받침이 있는 근본적인 개정이 가능하며, 향후 농촌진흥정책과도

1) 1962년부터 시작된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공동농업정책)은 로마조약(Treaty of Rome, 1958년 체결. EU의 법적 모태)에 법적 근거를 두고 발전해 오고 있는 EU농정의 중심임.

기간이 같기 때문에 큰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

○ 또한, CAP에 변혁을 요구하는 EU의 비농업부문으로부터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의 경제 금융 혼란에 의한 재정 제약이 크게 작용하여 CAP의 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EU의 새로운 정책 과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음.

□ Health Check(농정 검진)

○ 2008년에 실시된 농정 검진²⁾은 EU의 CAP 개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농정 검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디커플링 적용의 전반화) 직불금을 품목별 직접지불에서 단일직접지불(2003년 개혁 시 도입)로 거의 전 품목에 걸쳐 확대
※ 단일직접지불품목에서 부분적으로 존속하여 왔던 품목별 직접지불(부분 디커플링)도 대폭 축소
- (의무적인 모듈레이션³⁾의 확대와 누진화) 직접지불로부터 농촌진흥정책으로의 재원이전 확대 및 직접지불 고액수급자에 대한 누진적 적용 도입
- (농촌진흥정책에 있어 “새로운 도전”의 설정)
※ 5대 도전 과제: ① 기후변동, ② 재생가능 에너지, ③ 수자원 관리, ④ 생물다양성, ⑤ 낙농 부문의 지원
- (각종 시장지지의 축소) 곡물 등 농산물 가격 상승, 생산조정의 필요성 희석 등을 반영한 것이며, 감반율(의무적 휴경) 폐지(0% 운영), 우유와 감자 전분의 생산 할당 폐지 및 개입매입 축소

○ (신규 가맹국 간의 직접지불 교차(較差) 문제 해소) 가맹국 간의 직접

2) 농정 검진(Health Check)의 목적은 그 이전(2003년 개혁)의 CAP 개혁 실시 상황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정을 실시하는 것

3) 모듈레이션은 직접지불로부터 농촌진흥정책으로의 재원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9년 개혁에 도입되어 2003년 개혁에서 의무화되었음.

지불의 교차 시정과 제도의 일원화는 신규 가맹국의 CAP 통합을 완성시키는 핵심 요소임.

- 그간 논란이 되어온 신규 가맹국 간의 직접지불의 수준 교차 문제에 대해 EU 농업장관이사회의 유럽위원회는 2013년 이후 CAP에서는 신규 가맹국 간의 직접지불의 수준 교차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고 선언

□ EU의 CAP 개혁 관련 유럽위원회의 문건

1) 「2020년을 위한 CAP 시책」 논의 방향

○ 개혁의 방향

- 첫째, 기존 정책을 대체로 유지하면서 **직접지불의 가맹국 간 배분의 불평등 개선**
- 둘째, 보다 지속 가능하고, **정책 목적간·농가간·가맹국 간의 밸런스 개선** 및 **시책의 대상을 좁혀 EU시민에게 쉬운 이해 도모**
- 셋째, **환경과 기후 변동에 중점**을 둔 농촌진흥정책에 특화하여 **소득지지**와 대부분의 **시장시책**의 단계적인 철회

○ 세부 실천 계획

- (**직접지불의 다양화**) 기초적 소득지지 부분과 「greening」 부분(의무적인 환경 지불)으로 나누고, 부가적인 지불로 조건불리지역 지불과 기존 형태의 품목별 지불 추가
 - 기초적 소득지지의 면적 단가는 각국 내지 지역마다 일률적이므로 농가별 과거 생산 실적에 근거하는 방식은 폐지
- (**직접지불의 개편**) 대규모 경영·지주나 비농업자에 대한 지급제한과 소규모 농가에 대한 시책 마련
 - 개개의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상한의 설정 및 농업 종사자(active farmer)로 수급자를 제한

- 간단하고 쉬운 제도에 의한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불 시책 마련
- (농촌진흥정책의 새로운 목표 설정) ① 경쟁력 강화, ② 자연 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③ 균형 잡힌 지역진흥을 목표로 하고 아울러 환경, 기후 변화에 대해 혁신적인 대응 강조

2) 「2020년을 위한 CAP 예산」 논의 방향

- (명목예산 규모의 유지) 제안에서는 2014~2020년의 CAP 예산은 총 3,717억 유로(2011년 가격)로서, **각년도 예산 수준은 명목가액으로 2013년과 같은 수준 유지**
 - ※ EU 재정에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의 39.4%에서 2020년의 33.3%까지 떨어짐.
- 2010년 12월에는 2014년 이후의 CAP 예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하는 대신, 영국으로의 EU 각 출금 환불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영·프·독 3개국 합의)
 - 지금까지 CAP 재정에 포함되어 있던 일부 시책은 다른 비목으로 전환
 - 식품안전성은 항목 1의 「지적·포섭적인 성장」으로 극빈곤계층에 대한 식료 원조는 항목 3 「안전 보장과 시민권」으로 변경
- (직접지불 합의) **1ha당 지불 수준이 EU 평균의 90%를 밑도는 나라를 대상으로 그 괴리 폭의 3분의 1을 점차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
 - 재원은 지불 수준이 EU 평균을 웃도는 모든 가맹국이 비례적으로 부담
 - **환경 지불⁴⁾(greening)은 CAP 전체 예산의 30% 지불**
 - 기존의 요건인 상호 준수(환경 규제를 포함)를 웃돌고, 법으로 정해져 검증이 가능한 환경으로의 공헌에 대해서 지불
- (시장조치 창설) 다년도 재정적 범위를 벗어난 두 가지 정책 수단을 창설
 - 첫째, 위기 상황 발생 시, 농가에 신속하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긴급 조치 창설

4) 법으로 규정한 엄격한 기준의 친환경 영농의무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배분하는 지불금

- 둘째, 유럽세계화기금(EGF)의 역할을 확대하여, 세계화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여 새로운 시장 상황에 대한 적응을 촉진
- (농촌진흥관련 시책 재검토) 가맹국 간의 예산 배분을 객관적인 지역·경제적 기준에 따라 재검토
 - 재원인 유럽농촌진흥농업기금(EAFRD)은 다른 정책 분야를 포함한 모든 구조 기금과 더불어 EU 수준의 공통전략구조 및 각 가맹국과 유럽위원회 간 파트너십 협정으로 통합
 - 현재 약 40개의 농촌진흥 시책은 20개 정도로 축소하고 가맹국은 자유롭게 시책을 조합할 수 있을 전망
 - 직접지불의 greening에 의해서 불필요해지는 기초적인 환경 지불의 재원은 고도의 농업환경시책에 쓰는 것이 가능

※ 본 자료는 8월 6일~10일 간 국내 농업전문지의 농업·농촌 보도내용을 정리한 것임.

□ 농사용 전기료 3% 인상...전조재배·육묘농가 부담 '비상'

- 지식경제부는 3일 전 분야의 전기요금을 평균 4.9% 올리면서 **농사용 전기요금도 3% 인상**. 문제는 농사용 전기의 경우 요금 자체가 인상된 것뿐만 아니라 **기존 갑·을·병으로 나뉘어 있던 요금 체계가 갑과 을(을+병)로 축소 개편**되는데, 바뀐 을이 기존 을보다 비싼 병 요금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전기사용이 많은 육묘농가나 전조재배(조명을 사용한 재배) 농가는 15% 비싼 요금을 새롭게 적용받는데다 3% 인상까지 더해져 급격한 인상을 피할 수 없어 농가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농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원가율이 낮아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체계 개편에 따라 농사용(을) 사용자들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년차 25%, 2년차 15%, 3년차 5% 등 단계적 감면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힘.

자료 : 농민신문(2012.8.8).

□ 폭염에 가축 100만 마리 폐사... '뒤죽박죽 대책 없는 정부'

- 9일 농식품부는 '폭염상황 및 피해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이 101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밝힘. 앞선 8일 피해현황 보고에서 닭 78만 6,512마리(보험대상·24만 8,500), 오리 4만 780마리(1만 6,750) 등 83만 633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히고 이 중 1만 6,750마리의 오리가 보험에 가입됐다고 발표, 그러나 농식품부 발표와 달리 손해를 보상하는 NH손해보험(NH손보)은 8,500마리만 보험에 가입됐다고 발표해, 두 기관의 보도내용이 불일치. 그동안 농식품부는 NH손보의 피해보상 신청 건수를 토대로 피해현황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8일은 지자체가 집계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9일 발표에는 다시 보험대상 오리를 8,500마리로 줄이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발표로 일관,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8일의 경우 지자체와 손보사의 폐사 가축 마릿수의 차이가 있어 피해가 더 크게 나온 지자체 통계를 인용했다”고 밝힘. 즉, **기준 없이 피해액이 높은 데이터를 골라 사용**했다는 의미. 게다가 농식품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3억 이상의 가축 피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그 이하의 피해는 지자체가 입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폭염에 따른 보상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지 않아 실제 원활한 보상이 이루어질 지도 의문에 있음.

자료 : 이투데이, 축산신문, 농축유통신문(2012.8.9).

□ 가뭄에... 폭염에... 말라가는 ‘농작물’ 타들어가는 ‘농심’

- 5, 6월 논, 밭을 째 째 갈라지게 했던 가뭄에 이어 **최근 보름 넘게 35℃를 넘는 폭염**으로 10명의 농업인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고 농작물 역시 생육장애, 조기과숙, 시들음병, 각종 병해충 피해 증가. 기상청에 따르면, 7~8월은 덥고 습한 성질의 북태평양고기압에 따른 폭염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햇빛 데임 피해, 생리장애, 품질저하 등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배추, 고추 등 노지 밭작물은 물론 하우스 시설작물, 과수, 수도작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피해가 속출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자료 : 농수축산신문(2012.8.8).

□ 안농연 ‘이명박 정부 5년 농정평가’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8대 대선에 앞서 ‘이명박 정부 5년 농정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농업인, 학계, 정부 산하기관, 농민단체 등 총 213명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MB 농정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 [평가결과] ▲ **이명박 정부의 농정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1.57점에 불과**, 이명박 정부 취임 전후에 따른 농가 경영환경과 농업 정책 방향에 대한 응답은 ‘낙후됐다’는 응답이 102명(47.9%)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낙후됐다’는 응답도 36.6%(72명)로 높은 비중차지.

▲ FTA에 관한 문항은 대부분 '불만족스럽다'는 입장, 특히 **한·EU FTA와 한·미 FTA의 농산물 협상결과에 관한 응답은 102명(47.9%)이 '매우 불만족', 72명(33.8%)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함.**

▲ 소득정책에 대한 만족도 또한 부정적, 직불금 제도 및 예산은 126명(59.1%), 정책자금 금리 및 지원체계는 156명(73.2%), 농작물 재해 대책 및 보험제도는 147명(69%), 농산물 물가정책은 171명(80.2%) 등 대부분 정부의 소득정책에 대해 불만 표시. ▲ 농업인력정책의 만족도의 경우 후계인력 육성 및 지원은 102명(47.9%), 귀농·귀촌제도는 87명(40.9%), 농업인 교육정책은 87명(40.9%)이 불만족에 응답함.

자료 : 한국농어민신문(2012.8.9).

□ 조압 부실화 → 지도·경제기능 위축 → 농촌경제 악화

-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2012년 세법개정안'은 **농업부문 조세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됨. ▲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로 비과세 예탁금을 도입한 지 36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비과세 예탁금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기관에 충분한 세제지원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세 당기순이익과세 특례는 일반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힘.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성급하게 비과세 예탁금 등을 폐지했다는 비판, 특히 비과세 예탁금이 사라지면 조합 예수금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조합 부실화→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지도·경제기능 위축→농촌경제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비과세 예탁금은 취급상품과 업무구역의 제한을 받는 상호금융기관들이 제1금융권에 견줘 취약한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상품"이며, "조세감면 시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도농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표함.

자료 : 농민신문(2012.8.10).

□ 北 계획경제 사실상 포기...수확물 30% 농민에 소유권

2002년 북한 7·1 경제관리개선 조치	2012년 북한 6·28 경제관리체계(추정)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을 정해주지 않기로	생산설비 자재 연료 전력, 공장 등이 발전소와 거래 통해 해결
생활필수품 및 공산품 값 인상, 월급도 인상	생산과 판매, 수익과 분배를 공장·기업소가 결정
생산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국가기관 공무원, 교육, 의료부문 종사자 등에 한해서만 국가가 배급. 근로자들 배급제 폐지
국가가 식량배급 책임 안지고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 해결	농산물, 70%는 당국이, 30%는 농민들 몫

- 북한이 ‘새 경제관리체계’를 도입하면서 **사실상 계획경제와 배급제의 포기를 선언** ▲ [산업 및 배급] 국가가 각 생산단위에 계획, 국가가 주민의 식량 배급을 책임 ⇒ **각 단위에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 생산설비와 자재, 연료·전력문제도 국가가 아닌 관련 공장이나 탄광, 발전소와의 독자적인 거래를 통해 스스로 해결** ▲ [농업] 농산물 수확량의 100%를 국가가 수취 ⇒ **생산 계획과는 관계없이 전체 수확량의 70%는 당국이, 나머지 30%는 농민들이 수취** ▲ [정부반응] 이번 북한의 개혁에 관하여 우리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개선 조치일 뿐 근본적 체제변화로 보기는 무리라고 분석. ▲ [학계반응]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협동농장에 일부 자율성을 주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이며, “이런 개선 조치는 7·1조치 때도 시행했다가 실패했다”고 지적. 장용석 서울대 선임연구원은 “**금융이나 유통분야의 개혁이 수반되는지가 이번 조치의 성패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농민의 농산물 처분권 확대, 기업소의 생산 자율권 확대는 아직 낮은 단계지만 개혁·개방의 신호탄**”이 될 것이며, “향후 남-북,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개혁·개방의 폭과 속도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함.

자료 : 한국경제, 매일경제, 서울경제, 중앙일보, (2012.8.10)

※ 본 자료는 7월 31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 보리, 마늘 생산량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총괄

○ 7월 농림수산물 수출은 6.8억불로 전년 동월(6.4억불)대비 6.8% 증가

- 이는 '11년/'10년 동월 증가율(29.0%)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것이지만 유로존 위기로 인한 세계시장의 소비 위축 등을 감안하면 농식품 수출은 여전히 성장세로 판단

※ 1~7월 누계 기준으로는 44.0억불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

□ 부류별

○ (신선농산물) 파프리카(10.9% 증가)·백합(62.0%)·멜론(36.8%)·김치(4.0%) 등이 증가했으며 인삼(△22.7%)·팽이버섯(△9.0%)등은 부진

- (파프리카) 6월말부터 여름작기 물량이 공급되며 수출물량 확보가 원활하여 수출 증가
- (백합) 강원도 고랭지의 하절기 백합 출하 및 일본 시장내 기존 도매 시장 상장에서 대형마트 직접 공급 등으로 수출채널이 다변화되며 수출 증가
- (인삼) 지난해 중화권 수출이 크게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수출 부진
- (팽이버섯) 수출가격 하락에 따른 내수공급 확대로 실적이 감소
- (김치) 일본 수출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미국과 홍콩 수출은 크게 증가

○ (가공식품) 껌(25.0% 증가)·음료(60.9% 증가)·라면(29.5%)·소주(51.5%)는 증가했으나 설탕(△9.2%)·제3맥주(△6.0%)·커피조제품(△12.5%) 등은 감소

- (궤련) 최대시장인 중동 지역으로 6월 이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음료) 여름 성수기에 진입하며 일본·미국·러시아 등으로 수출 증가
- (라면) 한류 확산으로 러시아·홍콩·필리핀 등 신규시장에서 수출호조 지속
- (소주) 지난해 일본 지진 영향으로 소주 소비가 침체되었으나 연초부터 주력제품 리뉴얼 및 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실적 회복
- (맥주) 수입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 및 일본 시장 내 경쟁제품(무알콜맥주)의 소비가 늘어나며 수출 부진
- (커피조제품) 7월까지 누계로 3.6% 증가하였으나 당월로는 러시아·중국의 수출 소폭 감소

□ 국가별

○ 일본·미국·러시아 등이 증가하였으며 ASEAN과 중화권 수출이 감소

- (일본) 전년 동월대비 7.2% 증가
※ 주요 품목: 참치(18.6백만불, 38%), 김(10.5, 60%), 소주(8.9, 74%), 음료(6.4, 81%)
- (미국) 전년 동월대비 17.5% 증가
※ 주요 품목: 음료(5.2백만불, 49%), 김(4.4, 75%), 궤련(3.1, 44%), 라면(2.4, 65%)
- (러시아) 전년 동월대비 22.9% 증가
※ 주요 품목: 음료(3.8백만불, 38%), 궤련(2.8, 483%)
- (ASEAN) 전년 동월대비 5.5% 감소
※ 주요 품목: 참치(18.8백만불, △33%), 커피조제품(5.1, △30%), 궤련(4.9, △52.1%)
- (중화권) 대만, 중국, 홍콩 전년 동월대비 각각 4.9%, 3.7%, 3.3% 감소

※ 자료 작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